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단1401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B

변론 종결2022. 6. 17.

판결 선고2022. 7.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8.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627,0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27,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D은 2018. 3. 11. C에게 6,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9. 3. 11., 이자율 연 27.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8. 6. 2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7. 18.경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9617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10. 15. 'C는 원고에게 3,795,867원 및 그 중 3,110,420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11.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은 2016. 3. 11. C에게 7,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21. 3. 11., 이자율 연 27.4%, 지연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8. 6. 28.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7. 13.경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G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1) G는 2017. 11. 24.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H, C, I, J이 있었고, 상속분은 각 1/5이다. 망 G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2) 망 G의 채권자인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5. 접수 제9425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대위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4.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H, C, I, J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그 후 피고와 C,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8.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14.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4) 피고는 2018. 8. 1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2017.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와 그 후의 사정

- 1) C는 위와 같이 K조합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 이외에 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 2) C는 2018. 8. 8. 당시 원고 이외에도 L,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등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2019. 5. 17. 사망하였다.
-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0. 2. 1.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M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를 담보로 한 실제 대출금액은 30,000,000원이었다. 피고는 2019. 8. 1. M에 2,95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20. 4. 20. N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1,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O, M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피고는 그동안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으로 C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와 C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그 실질은 상속지분에 대한 매매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 2) 피고는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고, G의 공동상속인들은 2018. 8. 8. 상속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손쉽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므로, 사해의사가 없거나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한 각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그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7. 6. 기준으로 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19,863,251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6,256,634원 +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13,606,617원)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C가 망 G의 상속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각 1/5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C에게 위 상속지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C는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M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근저당권의 피보담채권액이 상환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N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N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 4. 17. 당시 가액은 합계 87,57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M 명의의 근저당권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담보채무액 30,000,000원(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어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의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다)을 공제한 잔액 57,578,000원(= 87,578,000원 - 30,000,000원)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1,515,600원(= 57,578,000원 × 1/5)이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이 된다.1) 3) 한편 2021. 7. 6.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9,863,25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1,515,6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4,627,03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4,627,0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627,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주현

별지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공제한 후 가액반환의 범위를
계산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8. 7. 26.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멸의 원인이 변제라면 변제에
있어서의 실제 자금의 출연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